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허종식의원 대표발의)

|          |       |
|----------|-------|
| 의안<br>번호 | 26478 |
|----------|-------|

발의연월일 : 2024. 2. 1.

발 의 자 : 허종식 · 박찬대 · 김교홍  
이성만 · 서영석 · 어기구  
김정호 · 배진교 · 이동주  
유동수 · 오기형 의원  
(11인)

### 제안이유

최근 고수익·고위험을 추구하는 집합투자기구인 사모펀드가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버스회사)을 집중적으로 인수하면서 과잉배당, 차고지 매각 및 차입매수(LBO) 등의 행위로 인한 시내외 등 버스사업의 공공성 훼손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임.

그런데 현행법상 노선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투입되는 준공영제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양도·양수가 신고제로 운용되고 있고 차고지의 매각 및 개발 행위 등에 대하여도 별도의 승인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감독관청이 개입할 여지가 크지 않음에 따라 사모펀드의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진입에 따른 공공성 훼손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사모펀드의 노선 여객운수사업의 양수 및 운영에 대하여 감독

관청의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재정지원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한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차고지를 매각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하려는 경우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함(안 제5조의3제1항 신설).

나. 시·도지사의 양도·양수 인가를 받아야 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대상에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14조제2항).

다. 사모투자집합기구가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수하려는 경우 시·도지사는 집합투자재산의 운용규모 및 운용경력, 재정상태 등의 요건을 갖춘 사모투자집합기구에 한하여 인가하도록 함(안 제14조의2제1항 신설).

라. 사모투자집합기구가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수 인가를 받으려는 경우 차입매수 계획, 배당계획 및 차고지 매각 계획 등이 포함된 투자전략계획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14조의2제2항 신설).

마.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수한 사모투자집합기구가 다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합병하거나 최대주주 등이 변경되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14조의2제3항 신설).

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수

사업자의 최대주주가 사모투자집합기구인 경우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금원에 대하여는 주주에게 배당할 수 없도록 함(안 제20조의3제1항 신설).

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의 최대주주가 사모투자집합기구인 경우 직전 회계연도 영업이익 이상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배당할 수 없도록 함(안 제20조의3제2항 신설).

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의 최대주주가 사모투자집합기구인 경우 담보, 물상보증 및 지급보증 등 노선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 법인의 재정을 부실하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함(안 제20조의4제1항 신설).

자.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최대주주인 노선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와 그 사모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한 다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합병하는 경우 5년간 자산·부채 및 손익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도록 함(안 제20조의4제2항 신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3(차고지 매각 등 허가) ①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차고지를 매도·증여 및 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차고지를 다음 각 호의 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③ 제1항에 따른 허가의 대상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제2항 전단 중 “대통령령으로”를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14조의2, 제20조의3 및 제20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사모집합투자기구의 양수자격 제한 등) ① 시·도지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

집합투자기구(이하 “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가 노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양수하는 경우(노선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양수하는 법인의 최대주주가 사모투자집합기구인 경우를 포함한다)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사모집합투자구에 한하여 제14조제2항에 따른 인가를 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0항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이하 “집합투자재산”이라 한다)을 2년 이상 운용한 경력이 있을 것
  2. 집합투자재산 운용 수익으로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인건비 및 관리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 것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을 위반하거나 같은 법률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없을 것
  4.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는 것
- ② 노선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양수 인가를 받으려는 사모투자집합기구는 차입매수 계획, 배당계획 및 차고지 매각 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투자전략계획서 등을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노선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양수한 사모투자집합기구(노선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양수한 법인의 최대주주가 사모투자집합기구인 경우를 포함한다)가 다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합병하거나 최

대주주 또는 지분의 100분의 10 이상이 변경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신고의 수리와 관련하여서는 제14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제20조의3(과잉배당 등의 금지)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의 최대주주가 사모투자집합기구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금원을 주주에게 배당을 할 수 없다.

1. 직전 회계연도에 순손실이 발생한 경우
2. 자본잉여금을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한 후 그 전환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이익잉여금
3. 차고지를 매각한 후 그 매각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차고지 매각대금
4.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원

② 제1항의 노선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는 전 회계연도 영업이익 이상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배당을 할 수 없다.

제20조의4(보증 등의 제한)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의 최대주주가 사모투자집합기구인 경우 노선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와 최대주주인 사모투자집합기구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노선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최대주주인 사모투자집합기구에 대

하여 담보, 물상보증 및 지급보증을 제공하는 행위

2. 노선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발행하는 사채나 유상증자 증권을 최대주주인 사모투자집합기구가 인수하는 행위

3.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 법인의 재정을 부실하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

②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최대주주인 노선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와 그 사모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한 다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합병하는 경우 합병 후 5년간 자산·부채 및 손익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간 동안 어느 한쪽 회계의 부채를 다른 회계의 자산으로 상환할 수 없다.

제90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호의2를 제3호의6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의2부터 제3호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5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차고지를 매도·증여 및 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한 자

3의2.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투자전략계획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자

3의3. 제20조의3을 위반하여 과잉배당을 한 자

3의4. 제20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담보, 물상보증 및 지급보증을 제공한 자

3의5. 제20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지 아니한  
자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차고지 매각 등 허가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차고지를 매도·증여 및 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  
보로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업의 양도·양수 인가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2항 및 제14조  
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  
도·양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회계 분리 기록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4제2항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최대주주인 노선 여객자동차운수  
사업자와 그 사모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한 다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수  
사업자가 합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 현<br>행                                                                       | 개<br>정<br>안                                                                                                                                                                                                                                                                                                                                                   |
|------------------------------------------------------------------------------|---------------------------------------------------------------------------------------------------------------------------------------------------------------------------------------------------------------------------------------------------------------------------------------------------------------------------------------------------------------|
| <p><u>&lt;신 설&gt;</u></p>                                                    | <p><u>제5조의3(차고지 매각 등 허가)</u></p> <p>① <u>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차고지를 매도·증여 및 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u></p> <p>② <u>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차고지를 다음 각 호의 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u></p> <p>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p> <p>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p> <p>③ <u>제1항에 따른 허가의 대상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p> |
| <p>제14조(사업의 양도·양수 등) ① (생략)</p> <p>②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양수하</u></p> | <p>제14조(사업의 양도·양수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u>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 대통령령으로-----</u></p>                                                                                                                                                                                                                                                                                |

려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 동안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양수를 제한할 수 있다.

③ ~ ⑩ (생략)

<신설>

-----  
-----  
-----  
-----  
-----.  
-----  
-----  
-----  
-----.

③ ~ ⑩ (현행과 같음)

제14조의2(사모집합투자기구의 양수자격 제한 등) ① 시·도지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가 노선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양수하는 경우(노선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양수하는 법인의 최대주주가 사모투자집합기구인 경우를 포함한다)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한하여 제14조제2항에 따른 인가를 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0항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이하 “집합투자재산”이라 한다)을 2년 이상 운용한 경력이 있을 것

2. 집합투자재산 운용 수익으로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인건비 및 관리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 것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을 위반하거나 같은 법률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없을 것

4.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② 노선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양수 인가를 받으려는 사모투자집합기구는 차입매수 계획, 배당계획 및 차고지 매각 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투자전략계획서 등을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③ 노선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양수한 사모투자집합기구(노선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양수한 법인의 최대주주가 사모투자집합기구인 경우를 포함한다)가 다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합병하거나 최대주주 또는 지분의 100분의 10 이상이 변경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신고의 수리와 관련하여서는 제14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제20조의3(과잉배당 등의 금지)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의 최대주주가 사모투자집합기구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금원을 주주에게 배당을 할 수 없다.

1. 직전 회계연도에 순손실이 발생한 경우
2. 자본잉여금을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한 후 그 전환한 날부

<신 설>

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이익  
잉여금

3. 차고지를 매각한 후 그 매각  
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  
한 차고지 매각대금

4.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원

② 제1항의 노선 여객자동차운  
수사업자는 전 회계연도 영업  
이익 이상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배당을  
할 수 없다.

제20조의4(보증 등의 제한) ① 국  
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  
금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의 최대  
주주가 사모투자집합기구인 경  
우 노선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  
와 최대주주인 사모투자집합기  
구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  
서는 아니된다.

1. 노선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  
가 최대주주인 사모투자집합  
기구에 대하여 담보, 물상보  
증 및 지급보증을 제공하는  
행위

제9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2. (생략)

<신설>

2. 노선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발행하는 사채나 유상증자증권을 최대주주인 사모투자집합기구가 인수하는 행위

3.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 법인의 재정을 부실하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

②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최대주주인 노선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와 그 사모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한 다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합병하는 경우 합병 후 5년간 자산·부채 및 손익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간 동안 어느 한쪽 회계의 부채를 다른 회계의 자산으로 상환할 수 없다.

제90조(벌칙) -----  
-----  
-----.

1. 2. (현행과 같음)

2의2. 제5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차

|                                                                                                                                                                             |                                                                                                                                                                                                                                                                                                                                                                       |
|-----------------------------------------------------------------------------------------------------------------------------------------------------------------------------|-----------------------------------------------------------------------------------------------------------------------------------------------------------------------------------------------------------------------------------------------------------------------------------------------------------------------------------------------------------------------|
| <p>3. (생략)</p> <p><u>&lt;신설&gt;</u></p><br><p><u>&lt;신설&gt;</u></p><br><p><u>&lt;신설&gt;</u></p><br><p><u>&lt;신설&gt;</u></p><br><p><u>3의2.</u> (생략)</p> <p>4. ~ 10. (생략)</p> | <p><u>고지를 매도·증여 및 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한 자</u></p> <p>3. (현행과 같음)</p> <p><u>3의2.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투자전략계획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자</u></p> <p><u>3의3. 제20조의3을 위반하여 과잉배당을 한 자</u></p> <p><u>3의4. 제20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담보, 물상보증 및 지급보증을 제공한 자</u></p> <p><u>3의5. 제20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지 아니한 자</u></p> <p><u>3의6. (현행 제3호의2와 같음)</u></p> <p>4. ~ 10. (현행과 같음)</p> |
|-----------------------------------------------------------------------------------------------------------------------------------------------------------------------------|-----------------------------------------------------------------------------------------------------------------------------------------------------------------------------------------------------------------------------------------------------------------------------------------------------------------------------------------------------------------------|